

인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79465(본소), 2021나62150(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류태근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7.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103548 판 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833,720원 및 그 중 27,833,720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로부터 안동시 I에서 진행되는 D조성 민간투자사업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5. 28.부터 2019. 6. 4.까지, 계약금액 953,500,000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특약사항 일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주자재(화장실타일자재 제외), 부자재, 인건비, 모든 소모자재, 식대, 경비, 가설자재 등 부대공사를

포함하는 단가계약으로,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E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원고 소속의 현장관리자로 두었는데, 원고는 E로부터 매월 기성내역과 노임대장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내역과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자재대금, 식비, 노임, E의 급여 등을 공제액으로 하여 정산한 정산서를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위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8. 12. 31.자로 타절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공사 진행에 있어 약정을 불이행한 바 없으므로 정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9. 1. 15.과 2019. 1. 25. 피고에게, 피고로 인해 공사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기성금액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피고가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 J은 2019. 3. 12.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20,000,000원에 정리하면 안 되겠냐고 하자, ‘일단은 사장님(피고)거는 제가 사장님 말씀하는 대로 정리를 할게요’, ‘이번 달 15일에 1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C회사과 중간정산을 한 다음에 주겠다’, ‘그런 건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제가 뱀은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다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고 11,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와 20,000,000원에 타절합의를 하였고, 2019. 3. 15.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투입비를 원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미지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남아 있어 잔여금 10,000,000원을 상계처리한다, 더욱이 피고로 인해 정산금액보다 공사 투입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어 매우 심각한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원고에게 금액을 청구 시 손실액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4, 17 내지 24,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와 일응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채무가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2019. 3. 15.경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포함된 견출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한 결과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금으로 27,833,720원(갑 제2호증)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7,83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 지급받은 정산금 11,000,000원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위 1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정산합의가 아닌 원고의 손실액을 추후 청구하기로 하는 이의를 유보한 합의였으므로, 견출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산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인 정산금액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3. 12.경 피고와 사이에, 견출공사에 대한 정산은 원고가 견출팀과 별도로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하도급공사(미장, 조적)에 관한 정산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적인 정산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11,000,000원은 위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6, 3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3. 12.경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견출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견출팀과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하도급공사(미장, 조적)에 관하여 정산금으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적인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산합의가 이의를 유보한 합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견출공사(콘크리트면마무리)가 미장공사의 소공종으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도 2018년 9월분 기성내역 정산시까지 견출공사를 포함한 전체 기성내역에서 견출공사를 포함한 전체 지출비용의 공제를 인정하여 2018. 9. 14.경 8월분 정산금 2,79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8. 10. 15.경 9월분 정산금 2,004,04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견출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4.경부터 원고와의 계약 하에 K을 팀장으로 하는 견출팀이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로도 위 견출팀이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인데, 갑 제25호증, 을 제1,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견출공사는 추가 작업 등의 사정으로 노임, 식비, 장비임대료 등 투입비용이 기성금액을 초과하였고, 그로 인한 손실비용이 공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미장, 조적공사는 2018. 10.경부터 기성금액이 노임, 식비, 장비임대료 등 투입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견출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기성금액과 전체 지출비용을 정산하려 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8년 10월분 정산에 대해 2018. 11. 30.경 원고의 직원에게 견출공사와 미장, 조적공사를 분리하여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E도 2018. 11. 13.경 원고에게 2018년 10월분 정산서에 대해 견출 부분은 원고측에서 견출팀과 협의하여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③ 결국 견출공사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8. 12. 31.자로 타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9. 1. 15.과 2019. 1. 25.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2, 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때까지도 피고와 사이에 견출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정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전체 기성내역과 전체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2019. 1. 15.경에는 ‘기성합계 414,826,062원, 공제금액합계 441,784,342원으로 과기성금이 26,958,280원인 상태이고, 최종기성금액도 407,280,602원’이라는 입장이었고, 2019. 1. 25.경에는 ‘기성합계 418,071,252원, 공제금액합계 433,739,872원, 과기성금이 20,470,660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피고가 2019. 1. 17.경 원청인 C회사에 ‘원고로부터 일괄 재하도급을 받아 피고가 시공 중이었으나 공사대금 정산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와 타절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산에 따른 노임 및 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을 보낸 후, 2019. 2. 초순경 C회사의 관여 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견출공사를 제외하고 미장, 조적공사에 한해 정산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25, 26, 32호증).

④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J이 2019. 3. 12.경 피고에게 정산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의사를 표시한 것은 전체 지출비용이 전체 기성내역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견출공사의 진행과정과 원청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견출공사는 원고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미장, 조적공사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J이 합의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E가 2019. 2. 8. 원고와 C회사에 이메일로 보낸 미장, 조적공사 정산서(갑 제25, 26호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가 완료된 금액(13,080,540원)에 원고와 피고의 항목별 주장금액을 반영한 미지급 금액 21,724,343원과 비슷한바, 피고가 2019. 3. 12.경 유선통화에서 위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20,000,000원에 정산하자고 제안한 것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정산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산금액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정산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733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산합의는 견출공사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나머지 공사(미장, 조적)에 관하여만 기성금과 자재대금, 식비, 노임 등의 공제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상호 간의 다툼을 마치기로 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5.경 과기성금이 26,958,280원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정산금 27,833,720원과의 차액이 875,440원 정도에 불과한바, 설령 공제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미 정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한 견출공사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화해의 목적이었던 분쟁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1,000,000원(= 22,000,000원 -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5.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유보한 정산합의 내지 착오 취소 주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희, 판사 백규재